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 원 의원 외 3명
제출연월일	2020. 8. 25.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110호
----------	-------

발의연월일 : 2020. 8. 25.

대표발의자 : 서 원

공동발의자 : 조배식, 김진호,
이계천

1. 제안이유

논산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안 제4조)
- 라. 시책의 수립(안 제5조)
- 마.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안 제7조)
- 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등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행 통행로의 도로 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6. 그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논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논산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시책방향 및 개선목표에 관한사항
2. 보행환경 및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있거나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
 -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 나. 녹지대 조성
 -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자동차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3.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

제8조(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이 편리하도록 보행환경 개선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시행

제11조(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통신,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공사 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30일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30일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30일 전

제13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논산시의회 의원	서 원 의원 외 3명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